의 령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272호 2012. 5. 9(수)

선람	기관의 장

조 례

○ 의령군 조례 제1824호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의령군 조례 제1825호 의령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 ---------- 3
○ 의령군 조례 제1826호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의령군 조례 제1827호 의령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의령군 조례 제1828호 의령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12
○ 의령군 조례 제1829호 의령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19
○ 의령군 조례 제1830호 의령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 ---------- 28
○ 의령군 조례 제1831호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고 시

○ 의령군 고시 제2012-31호 도로명주소 고시 ---------- 32

공 고

○ 의령군 공고 제2012-381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 33

(다음면에 계속)

회람									

▲ 발행 : 의령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 570-2410, 행정 2410 FAX(055) 570-2040

의령군 의회에서 의결된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의 령 군 수

2012년 5월 9일

의령군 조례 제1824호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를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민원봉사실장, 경제과장,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의령군지부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식품관련 직능 단체의 대표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민원봉사실장
2. 기금출납원 : 위생주무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의회에서 의결된 의령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의 령 군 수

2012년 5월 9일

의령군 조례 제1825호

의령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

「의령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의회에서 의결된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의 령 군 수

2012년 5월 9일

의령군 조례 제1826호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 마우스패스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을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령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령읍 서동리 443-4번지”를 “의령읍 의병로17길 6”으로 “부림면 신반리 509-1번지”를 “부림면 신번로10길 21-3”으로 한다.

②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곡면 예둔리 산135번지”를 “정곡면 법정로 580-9”로 한다.

③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의령읍 서동리 195번지”를 “의령읍 의병로9동길 30”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2항 중 “의령읍 서동리 564번지”를 “의령읍 의병로8길 44”로 “의령읍 대산리 265번지”를 “의령읍 남강로 417”로 한다.

[별표]의 보건소 보건진료소 위치 및 관할구역의 위치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④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궁류면 벽계리 483번지”를 “궁류면 벽계로 201”로 한다.

⑤ 의령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령읍 무전리 247번지”를 “의령읍 백산로 178”로 한다.

⑥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중 “부림면 신반리 886번지”를 “부림면 대한로 1655”로 한다.

⑦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령읍 서동리 564번지”를 “의령읍 의병로8길 44”로 한다.

⑧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령읍 서동리 564번지”를 “의령읍 의병로8길 44”로 한다.

⑨ 의령군 환경기초 위탁시설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중 “의령읍 무전리 78번지”를 “의령읍 의합대로 44-54”으로 한다.

[별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제4조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의령군 보건소	의령읍 의병로8길 16	의령군 일원
칠곡면 보건지소	칠곡면 자굴산로 7	칠곡면 일원
대의면 보건지소	대의면 대의로 44-6	대의면 일원
화정면 보건지소	화정면 화정로 298-6	화정면 일원
용덕면 보건지소	용덕면 용암로1길 5	용덕면 일원
정곡면 보건지소	정곡면 법정로 932-7	정곡면 일원
지정면 보건지소	지정면 함의로4길 8	지정면 일원
부림면통합보건지소	부림면 신번로10길 21-5	낙서·부림면 일원
봉수면 보건지소	봉수면 대한로 1213	봉수면 일원
궁류면 보건지소	궁류면 궁류로4길 3	궁류면 일원
유곡면 보건지소	유곡면 청정로 2241	유곡면 일원
양성 보건진료소	가례면 가례로8길 51-6	개성,양성,괴진,갑을,봉림,우곡,수성
중촌 보건진료소	대의면 모의로3길 20	중촌,하촌,행정,신전,곡소,마전,암하,추산,부곡,신기
화양 보건진료소	화정면 화정로 967-8	부곡,후곡,장박,백곡,보천,지곡,공모
신촌 보건진료소	용덕면 덕암로 59-10	이목,가미,와요,미곡,가락,상죽,하죽,신촌,상교,하교
백곡 보건진료소	정곡면 법정로3길 14-2	가현,신기,중촌,두호,적곡,무곡,예동
성당 보건진료소	지정면 강변로7길 10-12	득소,독대,백야,다안,성당,마산,포외
여의 보건진료소	낙서면 낙동강로8길 37	당지,신기,두곡,정곡,여의,내제
서암 보건진료소	봉수면 청계로 9	청계,방계,서암,오산,신현
평촌 보건진료소	궁류면 벽계로 15-1	평촌,예동,대현,벽계,운계1·2구
송산 보건진료소	유곡면 청정로 1679	신송산 1·2·3구,상촌,신촌,구송산,구오목,신오목,구상곡,신상곡,마두

의령군 의회에서 의결된 의령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의 령 군 수

2012년 5월 9일

의령군 조례 제1827호

의령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령군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로 한다.

제4조 중 "한글 전서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로 한다.

별표2,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제13조 관련)

기 관 별	공인 종류별	관 수 자
본 청	○ 군수 직인 ○ 전자이미지 공인 ○ 민원실전용 군수 직인 ○ 기타 공인	○ 행정과 서무업무담당주무관 ○ 행정과 정보화업무담당주무관 ○ 민원봉사실 일반민원업무담당주무관 민원봉사실 지적민원업무담당주무관 ○ 당해 소관업무 담당주무관
직속기관 사 업 소	○ 보건소장 직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 사업소장 직인 ○ 기타 공인	○ 보건소 서무업무담당주무관 ○ 농업육성과 서무업무담당주무관 ○ 사업소의 서무업무담당주무관 ○ 당해 소관업무 담당주무관
읍 · 면	○ 읍·면장 직인 ○ 민원실전용 읍·면장 직인 ○ 기타 공인	○ 총무담당주무관 ○ 민원봉사담당주무관 ○ 당해 소관업무 담당주무관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table>
<tr><td>공인명칭</td><td colspan="5"></td></tr>
<tr><td>종 류</td><td colspan="5">☐ 청인 ☐ 직인 ☐ 특수공인</td></tr>
<tr><td rowspan="11">☐ 등 록
☐ 재등록</td><td rowspan="3">(전자이미지 공인 인영)</td><td>등 록 일
(재등록일)</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등록(재등록) 사 유</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관 리 부 서</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8">(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 공인인영)</td><td colspan="4">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td></tr>
<tr><td>사용 기관(부서)</td><td>시스템명칭</td><td>통보일</td><td>최초사용일</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비 고</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11">폐 기</td><td rowspan="11">(전자이미지 공인 인영)</td><td>폐 기 일</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폐 기 사 유</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폐 기 자</td><td colspan="3">소속 :
직급 : 성명 :</td></tr>
<tr><td colspan="4">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td></tr>
<tr><td>사용 기관(부서)</td><td>시스템명칭</td><td>통보일</td><td>최초사용일</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td></tr>
</table>

[별지 제3호서식]

공 인 대 장

<table>
<tr><td>공인명칭</td><td colspan="4"></td></tr>
<tr><td>종 류</td><td colspan="2">□청인 □직인 □특수공인</td><td>관리부서</td><td></td></tr>
<tr><td rowspan="8">□등록
□재등록</td><td rowspan="8">(인영)</td><td>등 록 일
(재등록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새 긴 날 짜</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새 긴 사 람</td><td colspan="2">주 소 :
성명및상호 :
생년월일 :</td></tr>
<tr><td>최초사용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재 료</td><td colspan="2"></td></tr>
<tr><td>등록(재등록)
사 유</td><td colspan="2"></td></tr>
<tr><td>공 보 공 고</td><td colspan="2">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td></tr>
<tr><td>비 고</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8">폐기</td><td rowspan="8">(인영)</td><td>등 록 일
(재등록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폐 기 일
(분 실 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폐 기 사 유</td><td colspan="2">□ 마멸 □ 분실 □ 기타( )</td></tr>
<tr><td>폐 기 방 법</td><td colspan="2">□ 이관 □ 기타( )</td></tr>
<tr><td>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td><td colspan="2">소속 :
직급 : 성명 :</td></tr>
<tr><td>공 보 공 고</td><td colspan="2">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td></tr>
<tr><td>비 고</td><td colspan="2"></td></tr>
</table>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의령군 의회에서 의결된 의령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의 령 군 수

2012년 5월 9일

의령군 조례 제1828호

의령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의령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의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각 실과소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재난관리과장이 된다.

③ 재난관리과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실과소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의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재난관리과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 실과소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회원가입 등록신청서

회원번호		희망업무 분 야	□ 예 방 □ 대비·대응 □ 복 구 □ 정책환류
접 수	년 월 일	인 준	년 월 일

단 체 명 (기 관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전화 : ( )	
	FAX : ( )	
E-mail :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연락처	사무실 :
		Mobile :
주요 업무분야 :		

위 단체는 의령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등록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회원가입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기관) : 인

[별지 2호 서식]

제○○-○○○호

회 원 증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위 기관(단체)는 의령군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른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의령군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의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의령군 의회에서 의결된 의령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의 령 군 수

2012년 5월 9일

의령군 조례 제1829호

의령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학·사계 및 관련학·협회 등의 전문가와 의령군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의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령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및 관련 학·협회 등에 결정을 통지한다.

③ 관련 학·협회장 등은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 실시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의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본부장은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에 따라 위험도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3호 서식]
2. 주의 [별지 4호 서식]
3. 안전 [별지 5호 서식]

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별지 6호 서식]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지원)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급	
주소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제○○-○○○○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 가 단 원 증

성 명 : 주민번호 :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의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별지 3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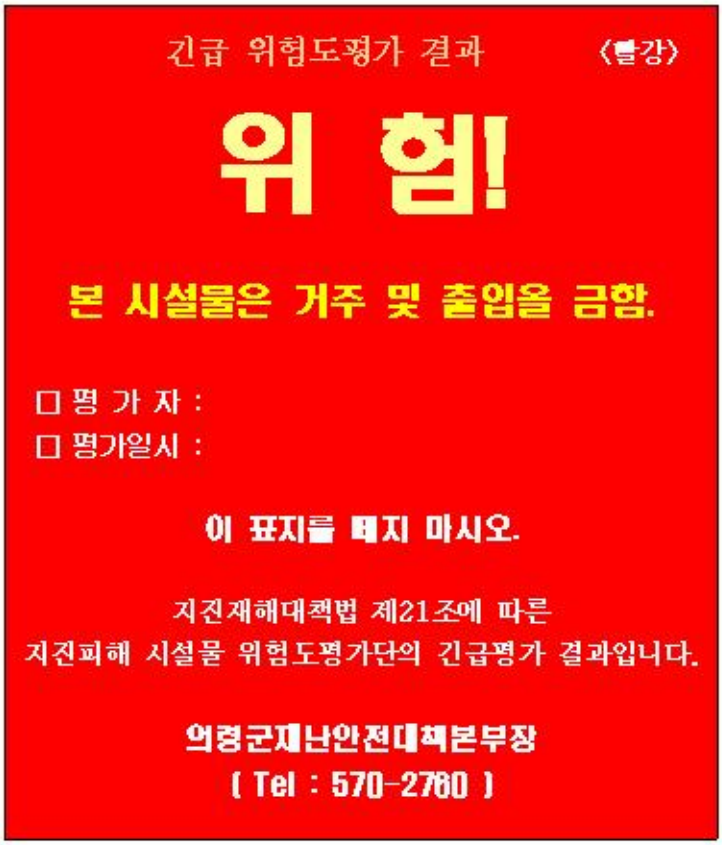

[별지 4호 서식]

[별지 5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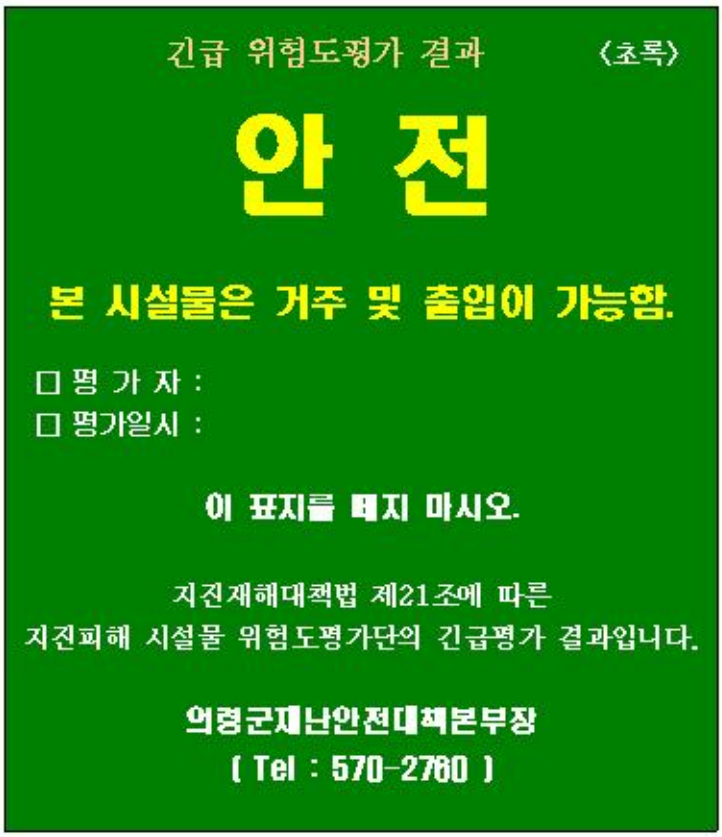

[별지 6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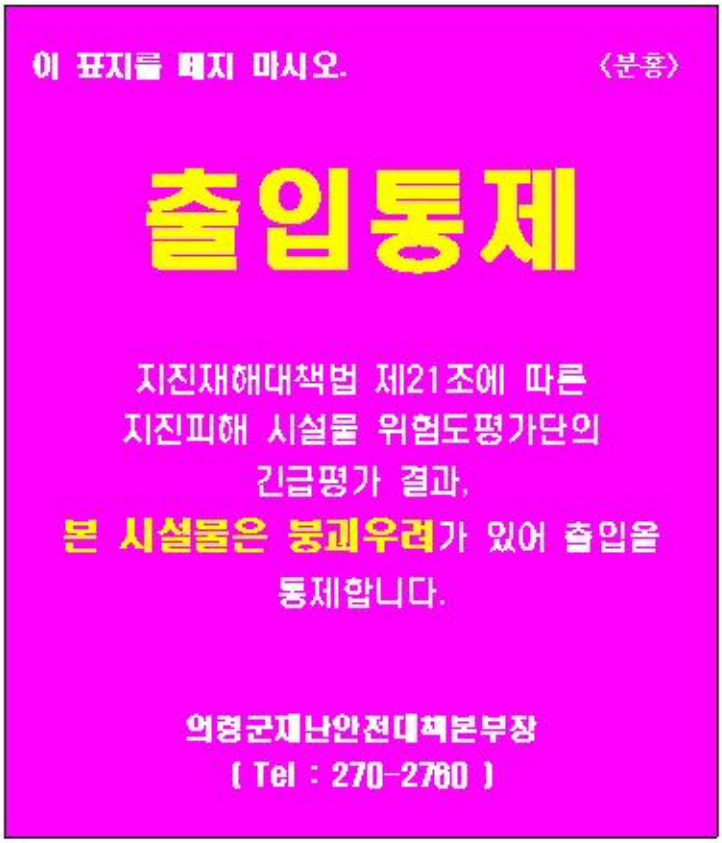

의령군 의회에서 의결된 의령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의 령 군 수

2012년 5월 9일

의령군 조례 제1830호

의령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

의령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회장, 부회장, 감사에 대하여 위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 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재정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이 감독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자체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의회에서 의결된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의 령 군 수

2012년 5월 9일

의령군 조례 제1831호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1호 중 "전일까지"를 "2일 전까지"로 하며, "반환할 수 있다."를 "전액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12 - 3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5. 09.

의령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소상로 14 등 5건

○ 폐지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오소북길 10-2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의령군 민원봉사실(☎055-570-2183,2187)에 문의 또는 의령군 홈페이지 및 새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5. 0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의령군 공고 제2012-381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 월 9일

의 령 군 수

상 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신고수리일	다음신고일
이엔씨건설(주) (전제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북경산2006-10-3)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279-5	2012.05.08	2015.05.08~ 2015.06.07